



#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에 관한 실무준칙 제정

2020. 11. 23. 제정(2020. 11. 24. 시행)

## 1. 취지

- 현재 사실상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없거나 정기적 소득이 없는 채무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흔한 상황임
- 이러한 채무자는 결국 개인회생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기 쉬운바, 그렇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늦어지게 될 뿐이고, 법원 입장에서도 사건을 이중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비효율과 부담이 발생하게 됨
- 이와 같이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개인회생의 취하 및 개인파산의 신청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실무운용상 전환하는 것을 시도하여 볼 수 있을 것임
-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소속 법관들 및 회생위원들 외에 외부 전문가들도 포함된 ‘개인회생제도개혁TF’ 를 구성하였고, 위 TF에서는 개인회생 실무와 관련된 각종 개선안을 논의하였는데, 실무운용상 절차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2020. 9. 1.부터 시행하여 왔고, 2020. 11. 23. 이를 실무준칙화하게 되었음

## 2. 구체적 내용

### ▣ 개요

- 실무운용상 절차 전환 방안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개인회생 사건들 중 아래와



같은 대상 사건들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보정명령(‘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을 보내는 방법임

#### ■ 대상 사건

- 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을 보낼 대상 사건으로는, ① 개인회생 사건 중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 ②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을 예정하고 있음
- 다만,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에는 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을 보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에 첨부될 양식들

- 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을 보내면서 이른바 ‘전환용’ 개인파산 신청서 양식과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양식을 같이 보내기로 하였는데, 그 취지는 아래와 같음
- 전환용 개인파산 신청서 양식
  - 통상적인 개인파산 신청서 양식에서 개인회생 신청 시에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는 제외한 나머지를 기재하거나 제출하도록 한 양식임
  - 이러한 양식을 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과 같이 보내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던 채무자가 스스로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양식

- 기존 개인회생 사건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송부 촉탁을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양식임
-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에 기재하였던 사항이나 제출하였던 자료를 중복하여 기재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한 대신에, 채무자로 하여금 이러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양식을 활용하여 개인회생 신청 시에 기재하였던 사항이나 제출하였던 자료를 후행하는 개인파산 사건의 기록에 보다 손쉽게 현출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임

■ 기타 사항

-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 동일한 판사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같이 담당하고 있는 점, 절차의 실무운용상 전환과 관련하여 전환 전후의 사건을 동일한 판사가 담당하면 사건 전반에 대하여 보다 용이하게 파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절차의 실무운용상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였던 판사가 개인파산 사건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음

### 3. 제정결과

■ 실무준칙 제407호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제1조 (목적)**

준칙 제407호는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개인회생의 취하 및 개인파산의 신청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실무운용상 전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생위원의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 작성)**

- ①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사건 중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 또는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1 보고서 양식]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생위원이 [별지 1 보고서 양식]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파산 절차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절차 전환에 대한 회생위원의 의견을 정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 제3조 (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

- ① 회생위원이 제2조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는 당해 사건에서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 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 또는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별지 2 보정명령 양식]에 따라 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판사는 회생위원이 제2조에 따른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준칙 제411호에 따라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제1항에 열거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같은 항에서 규정한 보정명령을 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사건에 관하여는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제2조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제2조에 따른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제1항에서 규정한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 제4조 (파산선고 후 개인회생 사건의 처리)

제3조에 의한 보정명령이 있는 후에 채무자가 그에 따라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으나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회생위원은 준칙 제411호 제2조에 따라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95조 제1호에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있다고 보이면 그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 판사는 법 제595조 제1호에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별지 1 보고서 양식]

## 제○○○회생위원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

사 건 : 20○○개회○○○○호

채무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제○○○회생위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 사건의 취하 및 개인파산 신청의 권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 다 음 -

절차 전환이 필요한 사유	<input type="checkbox"/> 채무자의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미치지 못함 <input type="checkbox"/>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그 외의 사유( )
기타사항	
절차 전환에 대한 회생위원 의견	적정 의견 또는 부적정 의견



[별지 2 보정명령 양식]

## 서울회생법원

### 보정명령

사        건                    20○○개회○○○○ 개인회생

신    청    인                    ○○○  
(채   무   자)                    서울 ○○구 ○○길 ○○

신청인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수입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하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제공할 만한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sup>1)</sup>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은 취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2. 위 제1항에 따라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은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보정명령에 첨부된 [첨부1] 개인파산 신청서 양식에 따라 개인파산 신청서를 작성한 후 ‘파산 신청에 따른 추가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첨부1]에 따라 작성된 개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준에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였던 신청서 및 첨부서류도 같

---

1) 절차 전환이 필요한 사유에 따라 “채무자의 수입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하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제공할 만한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문구를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로 변경하여야 할 수 있음



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위 제2항에서와 같이 [첨부1]에 따라 작성된 개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에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였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같이 제출하기 어렵다면 대신에 [첨부2]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양식에 따라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1]에 따라 작성된 개인파산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기 바랍니다.
4. [첨부1]에 따라 작성된 개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하기 바랍니다.
5. 만일 개인회생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기 바랍니다.

- ※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주로 파산관재인 보수로 사용될 일정한 금액(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30만 원)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예납명령이 있기 전에도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서 30만 원을 미리 예납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가 아닌 민사예납금(하단사건)으로 납입하고 납입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비면책채권으로 되어 있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보정명령에 답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1호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1]

# 파산 및 면책 신청서(전환용)

인지  
2000원

기존 개인회생 사건의 사건번호 : 20\_개회\_\_\_\_\_ (담당 판사의 성명 : \_\_\_\_\_)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_\_\_\_\_ )

주 소 : (우편번호 : \_\_\_\_\_ )

거 소 : (우편번호 : \_\_\_\_\_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_\_\_\_\_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_\_\_\_\_ ), 집전화( \_\_\_\_\_ ), e-mail( \_\_\_\_\_ )

## 신 청 취 지

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 청 이 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2.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첨부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며,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첨 부 서 류

1. 파산신청에 따른 추가 진술사항 1부
2. 채권자목록 1부
3.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1부

###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위 사건에 관한 파산선고결정, 면책결정 등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신청인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또는 면책심문기일 결정), 면책결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서울회생법원 귀중

파산사건번호	
면책사건번호	
배당순위번호	
재 판 부 제 단독	



# 파산신청에 따른 추가 진술사항

서울회생법원 귀중

신청인 (인)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위 각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면책불허가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1.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도박죄로 고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 (2) 과거 1년간 물건을 할부나 월부로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매각, 입질 등)을 한 경험 (있음, 없음) (물건의 품명, 구입시기, 가격, 처분 시기 및 방법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 (3) 이번 항목은 개인 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분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영업 중 상업장부의 기재
  - 정확히 기장하였다.     부정확하게 기장하였다.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 ▷ 영업 중에 도산을 면하기 위하여 상품을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한 사실 (있음, 없음)  
(언제 무엇을 매입원가의 몇 %로 할인판매를 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개인 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분은 아래 8종류의 사실증명(현재로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하여 주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종류의 사실증명 :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휴업사실증명, ③ 폐업사실증명, ④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⑤ 소득금액증명, 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⑦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⑧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 2. 채권자와 채무지급방법에 관하여 교섭한 경험 (있음, 없음)

- ▷ 그 결과 합의가 성립된 채권자수 ( )명
- ▷ 합의에 기하여 지급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매월 지급한 총액    1개월 평균 (    )원 정도
- ▷ 지급 내역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3.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안에 √ 표시)

(1)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두 가지 이상 선택 가능)

-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하게 됨
- 실직함
- 경영 사정 악화로 사업 폐업함
- 급여 또는 사업 소득이 감소됨
- 병에 걸려 입원함
- 그 밖의 사유 :

(2)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       년    월    일

4.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 (있음, 없음)

시기(연월일)	차용(채무 발생) 원인, 금액, 조건 등

(있다면 차용 또는 채무발생의 시기, 원인, 금액, 조건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5. 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 (있음, 없음) (변제한 채권자의 성명, 변제시기, 금액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_\_\_\_\_

\_\_\_\_\_

6. 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한 1,000만원 이상의 재산 (있음, 없음) (다만, 여러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1,000만 원 미만이라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_\_\_\_\_



- ☆ 처분의 시기, 대가 및 대가의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처분에는 보험의 해약, 정기에금 등의 해약, 퇴직에 따른 퇴직금수령 등도 포함합니다.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수령에 관하여는 다음의 7항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히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및 사건별수불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7.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있음, 없음)

- ☆ 임차물건,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의 액수와 실제로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액수,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 (있음, 없음)

- ☆ 분여한 재산과 그 시기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이혼에 관한 재판서(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있음, 없음)

년 월 일 친족 \_\_\_\_\_ 의 사망에 의한 상속

상속상황

- ㉠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음
- ㉡ 신청인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모두 취득하였음
- ㉢ 신청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하였음

주된 상속재산과 그 처분의 경과

-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주된 상속재산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항을 선택한 분은 다른 상속인이 주된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채권자 목록

### 1. 채권내역

순번	채권자명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 원인	최초 채권액	사용처	보증인	잔존 채권액	
							잔존 원금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①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						합계	잔존 원금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 채권자목록 기재요령

### ※양식※

순번	채권자명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원인	최초 채권액	사용처	보증인	잔존 채권액	
							잔존 원금	잔존 이자·지연손해금
1	00카드 (주)	01.1.7- 05.1.31	②	6,000,000	생활비	김 이 순	5,234,567	789,456
1-1	김 이 순	02.5.8	③	6,000,000			미정	미정
2	00은행 (주)	02.5.8	①	10,000,000	창업자금		10,000,000	2,456,789
9	채 00	03.6.9	①	5,000,000	병원치료비		5,000,000	1,150,000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①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	합계	잔존 원금	잔존 이자·지연손해금
	24,630,812	20,234,567	4,396,245

### ※ 기재요령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 가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면책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자목록은 채무별로 순번을 달리하여 기재하십시오. 다만,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발생원인이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 『채권자명』란에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채권자의 성명이나 법인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채권자의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잘못된 기재례 : 순이 엄마, 영주댁, 00상사).
-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보증인』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무는 보증인이 보증한 채무의 바로 다음에 기재하되, 『순번』란에는 보증한 채권의 순번에 가지번호(예:3-1)를 붙여 표시하고, 『잔존채권액·잔존원금 / 잔존 이자·지연손해금』란에는 '미정'이라고 기재하십시오.
- 『차용 또는 구입일자』란에는 원래 차용 또는 구입일자를 기재하고 채권양도시 양도일자를 그 옆에 ( )를 표시하여 추가하며, 『발생원인』란에는 표 하단에 기재된 발생원인의 해당번호를, 『최초 채권액』란에는 채무발생 당시의 금액을, 『사용처』란에는 구체적 사용용도 또는 구입물품을 각 기재하십시오.
- 『잔존 채권액·잔존원금 / 잔존 이자·지연손해금』란에는 파산신청(면책신청) 당시까지 채무자(채무자)가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하단의 『합계』란에는 채무의 총액을 기재하며, 『잔존원금』, 『잔존 이자·지연손해금』란에는 각각의 합계액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파산신청에 따른 추가 자료제출목록

채무자 \_\_\_\_\_ (인)

채무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 아래표의 해당  란에  표시하고 뒷면에 제출하는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아래의 자료 중 개인회생 신청 시에 이미 제출한 자료로서 [첨부2]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양식에 따른 문서송부촉탁을 통하여 이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자료를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 번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제출 여부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발급 기관
1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채무자 외 제3자의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채무자 본인의 주민등 록번호는 전체 표기)	<input type="checkbox"/> 제출하였음		구청 등
2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 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input type="checkbox"/> 제출하였음		
3	채무자가 개인 영업을 하였던 경우, 채무자의 사실증명 (현재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 아래 8종류의 사실증명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해주는 서류를 제출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⑤소득금액증명 ⑥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⑦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 액증명 ⑧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input type="checkbox"/> 제출하였음		세무서 <sup>2)</sup>





[첨부2]

## 문서송부촉탁신청서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1. 기록의 보관처 : 서울회생법원
2. 송부촉탁할 기록 : 20\_\_개회\_\_\_\_\_호 사건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3.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 . . . .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서울회생법원 귀중